

제439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 1 호

국회사무처

일시 2026년9월1일(화)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가. 법무부 소관

나. 법제처 소관

다. 감사원 소관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마. 헌법재판소 소관

바. 대법원 소관

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가. 법무부 소관

나. 대법원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3

가. 법무부 소관

나. 법제처 소관

다. 감사원 소관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마. 헌법재판소 소관

바. 대법원 소관

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3

가. 법무부 소관

나. 대법원 소관

(10시10분 개의)

○소위원장 김한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2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 예결산소위원회 첫 번째 회의입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 선임되신 위원님들 환영합니다.

첫 회의인 만큼 위원님들 간에 간단히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인 저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입니다.

결산과 예산,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 첫 단추인 오늘 잘 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 오른쪽에 계신 김기표 위원님부터 여야 위원님들 교대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위원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김기표 위원** 김기표입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첫 번째인데요. 올해도 지난 한 해 비용의 쓰임새를 정확하게 결산하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다음 국민의힘 광규택 위원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광규택 위원** 우리끼리 또 이렇게 인사하라 하시니까 좀 어색하기는 한데, 예산 결산이 부분은 정말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여야 위원들께서 국민들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는지 살펴보는 소위니까 함께 그런 부분들에 대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참고로 소위기는 하지만 인사까지는 언론인 취재가 허용되거든요. 지금은 안 계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여하튼 혹시라도 앉아 계신 분이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김동아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김동아 위원** 반갑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는지 제대로 감시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결산소위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임무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감사합니다.

다음 주진우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주진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진우 위원입니다.

예산과 결산의 중요도는 저희 위원들이 더 잘 아는 만큼 충실히 심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감사합니다.

김용민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위원** 반갑습니다.

김용민 위원입니다.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다음 박균택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박균택 위원 우리 법사위 담당 기관들의 특성상 예산 규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또 예산이 명백히 잘못 쓰이는 사례도 적다는 특징을 갖는 기관들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국민적인 시각에서 잘 한번 살펴보고 또 민생을 위한 예산 책정 또 사용 이런 부분들이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지금 재석하지 않은 위원님들의 인사는 추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들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혹시 언론인 여러분이 계시면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가. 법무부 소관

나. 법제처 소관

다. 감사원 소관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마. 헌법재판소 소관

바. 대법원 소관

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가. 법무부 소관

나. 대법원 소관

(10시14분)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6개 기관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2시에 정기회 개회식 및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표는 오전에 다 끝내면 좋겠는데 이견이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상황을 보면서 여야 위원님들 논의해서 회의시간을 추가로 배정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의 결산소위가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처리해서 넘겨야 저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심사 순서는 법제처,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법원, 감사원, 법무부 순으로 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이견이 있는 사안 위주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심사자료는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구두 또는 별도로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을 각 기관별로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세진 전문위원께서 시정요구 유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세진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좌석에 배포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소위원회 심사 참고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유형 개요로는 시정요구, 부대의견, 감사요구 세 가지가 있습니다.

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시정요구입니다.

결산 시정요구의 근거는 국회법 제84조 2항에 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 및 분류기준은 예결위에서 배포한 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서 작성기준에 따른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다섯 가지로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법사위 소관 결산 시정요구 채택 현황이 자료에 있는데, 2024회계연도 결산에는 변상, 징계가 없고 시정, 주의, 제도개선 합쳐서 136건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부대의견 보시겠습니다.

부대의견은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로 다루기 곤란한 내용으로서 큰 틀에서 정부에 정책 방향을 제시하거나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 내지 직접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시정요구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법사위 소관 결산 부대의견 채택 현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참고로 2024회계연도 결산에서는 법사위 소관 부처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감사원 감사요구입니다. 근거는 국회법 제127조의2에 있습니다.

감사 요구의 요건은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일 것, 감사 사안을 특정할 수 있을 것, 마지막으로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되는데 본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수고하셨습니다.

상세한 시정요구 기준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저 자료제출 요구하고 출석요구 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말씀해 주십시오,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 위원 오늘 결산 심사하는 우리 소관기관들은 통상 업무가 다 한정돼 있고 또 예산 규모도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 결산에 심사할 내용들은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특이사항은 3대 특검이 운영됐다는 겁니다. 3대 특검이 동시에 운영되

면서 다 예비비로 예산이 사용됐는데,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는 실집행액이 65억인데 특수활동비는 21억이에요. 민중기 특검은 90억 실집행액인데 특수활동비가 14억으로 나왔고, 이명현 특검 같은 경우에는 54억 실집행을 했는데 6억 9000만 원을 특수활동비로 썼습니다. 작게는 10% 정도에서 많게는 30% 정도를 특수활동비로 썼다는 겁니다.

지금 통상적인 상설화된 어떤 기관에서 수사 정보를 수집한다든지 휴민트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에 특수활동비가 들어가는데 특검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정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다 특활비로 처리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운영지원단장이라도 나와서 설명을 하든지 특활비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 했는데 아마 위원장님 단계에서 이게 안 받아들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감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특검에 대해서 특활비 활동내역을 점검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마는 이제는 다르지요. 작년에 3대 특검이 운영된 것은 정부, 여당에서 밀어붙여 가지고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라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그리고 금년에 운영된 특검이 2차 종합특검하고 또 곧 운영될 참정권침해 특검하고 될 건데 내년에 국회에서 또 이 특활비 사용내역을 보자고 할 때 그런 관례가 없었으니깐 안 보겠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제 검사 수사권이 박탈되고 큰 사건에 대해서 특검이 정말로 많이 가동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 문제라도 국민들께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국회의원이 대신해서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3대 특검에서 사용된 특활비만 하더라도 합쳐 보면 40억이 넘어요. 작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검사들 특활비 쓴 것을 가지고 자료 내라고 국회에서 얼마나 많은 요구를 했습니까. 똑같은 차원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특활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각 특검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 주시고 특검이나 특검보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실무를 담당했던 운영지원단장이라도 와서 설명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예, 의견 잘 들었습니다.

혹시 운영지원단장이든 특검의 특활비 관련해서 관련자가 나와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선례가 없는 일이고 이 부분은 자료 요청을 통해서 기존의 관례에 따라서 확인하면 될 거라고 판단했는데요. 오늘 예결위는 아닙니다만 이 부분은 추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저도 특활비 관련해서 자료가 어떤 식으로든 제공돼야 되고 그것은 검사나 특검이나 비슷한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추후 논의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간단히 한말씀만 덧붙여서……

○소위원장 김한규 예, 주진우 위원님.

○주진우 위원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국은 특검에 대해서 결산을 아무도 못 들여다본다는 게 문제거든요. 특히 안 되면 법무부에서라도 자료를 간접적으로 받아서 법무부에서 설명하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봤는데 법무부도 실질적인 사용내역을 모를뿐더러

‘특검이 쓴 것을 왜 우리 법무부가 대신해 설명해야 되냐’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예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원칙에 어긋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예. 그 부분은 이따가 법무부 관련 질의를 할 때 주진우 위원님께서 아마 서면질의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 주시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김동아 위원님.

○김동아 위원 개인적인 생각에는 특검이 지금 행정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예산을 서류를 하고 이 능력 자체도 사실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주진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에서 관리를 하든지 전반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진행되는 게 어떨까 싶지 단순히 그냥 특검마다 불러서 예산을 따지는 것도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제도개선 차원에서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예, 알겠습니다.

손솔 위원님, 다른 분들도 간단하게 인사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손솔 위원 성평등가족위 결산 의결하느라 좀 늦었는데요. 예결소위 처음 들어왔는데 꼼꼼하게 따질 것 따지고 할 수 있는 것들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법제처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영찬 법제처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세진 전문위원님, 정부 측 이견이 있는 사안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세진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결산 심사자료 보시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개관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대체토론 및 서면질의로 총 9개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9개 사업에 대해서 주의 3건, 제도개선 8건, 11건의 시정요구사항으로 의견을 주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심사자료 작성 과정에서 법제처와 저희가 협의해 본 결과 법제처에서는 특별히 이견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됐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서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시정요구유형을 달리하셨는데 그 부분을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총액인건비 비대상경비에서 총액인건비 대상경비로의 전용 재발 방지 필요 지적사항입니다.

법제처는 2025년 보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총액인건비 대상사업에서 2억 400만 원, 총액인건비 비대상사업에서 2억 6700만 원 등 총 4억 7100만 원을 전용하였는데 이는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에도 시정요구에 따라 조치결과를 보고하였으나 전용총액 및 비대상경비로부터의 전용액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법제처는 예측 가능한 인력운용 수요를 예산편성 단계에서 충실히 반영하는 등 총액인건비가 적정 수준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확정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정원을 관리하여 향후 총액인건비 비대상경비에서 대상경비로의 전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제도개선으로 광규택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고 주의 의견으로 박은정 위원님, 주진우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다음입니다. 1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법령정비 과제 관련 법령 소관부처의 수용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 지적사항입니다.

최근 5년간 발굴된 법령정비 과제 중 부처협의 단계에서 법령 소관부처가 수용하지 않은 과제가 전체 3517건 중 1096건으로 나타났고 불수용 과제 중 835건이 법령 소관부처에서 ‘법령정비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에 해당하였습니다. 현재 불수용 사유 구분은 추상적·포괄적으로 실제 법령 소관부처의 불수용 원인을 파악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법제처는 추상적·포괄적인 불수용 사유 분류기준을 구체화하고 법령정비 과정에서 소관부처의 부담 최소화 및 관계부처 협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법령정비 과제에 대한 소관부처 수용률 제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의견으로 김민전 위원님, 제도개선 의견으로 광규택 위원님, 박균택 위원님이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법제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차장 최영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견은 없고요. 다만 말씀 주신 대로 시정요구유형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을 해 주시면 되는데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이런 상황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2건에 대해서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정리를 할까요?

4페이지의 총액인건비 대상, 제도개선으로 할지 주의로 할지에 대해서 의견 부탁 드리겠습니다.

○광규택 위원 제가 하나만 여쭙봐도……

○소위원장 김한규 예, 광규택 위원님.

○광규택 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장기국외훈련 부분을 작년에 특별히 예측을 하지 못했던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보통 장기국외훈련 대상자를 그 전년도에 선발해 가지고 보내는 것 아닌가요?

○법제처차장 최영찬 부처에 배정된 국외훈련은 보통 예산에 편성하는데요. 그런 것 말고 부처 간 공동경쟁으로 선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해당 연도에 특별히 공동경쟁으로 선발된 인원들이 많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규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주진우 위원님, 그러면 저렇게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곽규택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제도개선으로 가면 어떨까요?

○주진우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주진우 위원님이 동의해 주셨으니까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가면 좋겠는데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16페이지인데요, 이 부분은 곽규택 위원님하고 박균택 위원님 모두 제도개선으로 말씀하셨는데 제도개선이 맞을 것 같은데 위원님 동의하시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어떨까요?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전문위원님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위원 제가 하나만……

○소위원장 김한규 예, 말씀하십시오.

○주진우 위원 8쪽 청소년법제관 사업은 지금 한 건가요, 보고를 건너뛴 건가요? 주의로 되어 있는데, 김민전 위원이 지적……

○소위원장 김한규 이것은 주의가 되는 거지요? 기관에서 의견이 없다는 것은 동의한다는 얘기인 거지요?

○주진우 위원 기관이 수용하는 거지요?

○법제처차장 최영찬 예,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주진우 위원 하나만 명확히 할게요. 지금 보면 예산은 3억 53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이 2025년도에 214명인데 대부분 비대면이거든요. 그러면 대면한 57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1명당 비용이 너무 높아요. 비대면이 되는 게 어떤 경우지요?

○법제처차장 최영찬 아무래도 중학생·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업 부담 때문에 대면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참여율이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비대면 위주로 하고 대면은 간담회라든지 포상 수여식이라든지 이런 걸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주진우 위원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학교에다가 비용을 주고 하도록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터넷으로 하는 겁니까, 어떤 형식……

○법제처차장 최영찬 인터넷으로 하는 겁니다. 학교에 비용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을 통해서 토론마당이라든지 아니면 퀴즈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주진우 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참여율이 너무 저조하고 만약에 비대면이라면 인터넷으로 하는데, 법령퀴즈 골든벨에 42명이 참여하고 또 시상식 하고 진로탐방 간담회라는 게 결국은 여기서 비대면 한 것에서 우승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불러 가지고 시상식 했다는 것인데 이 행사 한 번 하고 나서 3억 5300만 원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좀 제대로 개선을 하기 바랍니다.

○법제처차장 최영찬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실효성의 문제도 좀 생기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 사업에서는 저희가 이 사업을 폐지해서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주진우 위원 폐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김한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세진** 지금까지 법제처 결산과 관련하여 논의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주의 1건, 제도개선 8건 등 모두 9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과 감사요구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해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로 순서를 말씀드리면 법무부가 다른 기관보다 훨씬 의견이 많아 갖고요. 그래서 법무부를 뒤로 빼고 다른 분들 기다리지 않게 좀 이슈가 적은 부처별로 먼저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성수 헌법재판소 사무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진 전문위원님 정부 측 이견이 있는 사안 위주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이세진**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결산 심사자료를 보시겠습니다.

1페이지 개관입니다.

총 11개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으로는 시정 1건, 주의 5건, 제도개선 9건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복사업은 4건으로서 중복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공익 목적 국선대리인 제도 및 참고인 연구비 등 사업의 활용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지적입니다.

공익 목적 국선대리인의 선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고 참고인 제도 활용이 저조한 편입니다.

국선대리인보수 사업은 5년간 불용·초과가 반복되었고 초과분은 참고인 연구비 등 사업에서 내역변경을 통해 충당하였으며 참고인 연구비 등 사업은 2021년, 23년, 24년 연속적인 불용 끝에 2025년에 본예산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헌법재판소는 공익 목적 국선대리인 선임기준을 구체화하여 제도 활용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참고인제도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의견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보수 등 사업의 내역사업별 집행 현황을 분석하여 수요에 맞

게 예산규모를 재산정하고 이를 정기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반복 불용 및 임의집행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 필요하다는 주의 의견과 제도개선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처리된 헌법재판 사건에 대한 관리 강화 및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한 각하 결정 감소 방안 마련 필요 의견입니다.

심판사건 접수 후 4년이 경과한 장기 미제사건이 2021년 41건에서 2025년 74건으로 증가하였는바, 2026년 4월 헌법재판소법 개정에 따른 재판소원제도 도입으로 장기미제 사건의 누적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한 각하 결정 비중이 2016년 75%에서 2025년 83%로 증가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장기미처리 사건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사건의 경중, 난이도,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한 사건 관리 및 심리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한 각하 결정 감소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시정 의견으로 주진우 위원님께서, 제도개선 의견으로 광규택·김승원·손솔 위원님께서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국외통신원 운영 사업의 실적 저조 및 전면 재검토 필요 지적입니다.

국외통신원 운영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실적 미달과 예산 불용으로 과거 국회 결산 심사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아온 바 있으며 최근 4년간의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사업의 성과는 오히려 개선되지 않고 2025년에는 예산 집행률이 36%로 최근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수시직무 실적이 저조하고 장기 재위촉 사례가 지속되는 등 연구 수요와 연계된 실질적 활용이 미흡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연구원이 향후 본 사업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근본적인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사업의 존치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주의 의견으로 손솔 위원님, 제도개선 위원으로 광규택·박형수 위원님께서 제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헌법재판소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사무차장 지성수 저희 기관 입장은 의견 없음입니다. 다만 세 가지 주신 시정의견 중에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6페이지,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니까 하나씩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국선대리인 제도 및 참고인 연구비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동아 위원** 제도개선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김동아 위원님께서 주의 의견 주셨는데 제도개선 동의해 주셨으니까 이것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지는 거의 다 동의하시는 거니까요, 방식에.

그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6페이지에 잠깐 한 가지 여쭙볼게요.

○**소위원장 김한규**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 위원** 사무차장님 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소사무차장 지성수** 예, 안녕하세요.

○**곽규택 위원** 한 가지 여쭙보려고 그러는데요. 참고인 연구비라고 하는 게 원래 뭘니까?

○**헌법재판소사무차장 지성수** 저희가 변론이나 이런 거 할 때 전문가 의견을 듣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고인 선정을 해서, 그러니까 그 선정 자체는 주로 양 당사자가 추천한 분들을 저희가 참고인으로 모십니다. 그럴 때 오셔서 진술을 하시면 그때 드리는 사례비입니다.

○**곽규택 위원** 그런데 그게 왜 활용이 저조한가요? 별로 그럴 만한 사건이 안 생겨서 그런가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지성수** 그전까지는 어느 정도 소요가 됐는데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위낙에 좀 관심 받는 권한쟁의라든가 탄핵사건이 있어서 그때는 변론을 한 30회에 걸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요 사건들이 변론에 놓이지거나 이런 사건들이 없어서 전부 불용이 된 상황입니다.

○**곽규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세진** 위원장님, 하나만 추가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시정의견 주신 게 6페이지에 보시면 두 가지 종류입니다. 국선대리인 선임기준 관련해서 제도개선 의견 주신 게 있고 밑에 보수 관련해서 주의와 제도개선 의견을 따로 주신 게 있는데 이 부분을 하나로 합쳐서 하실 건지 따로따로 중복해서 지적을 하실 건지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곽규택 위원** 따로따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이 전혀 다른 거잖아요.

○**김동아 위원** 원래 집행이 잘 되는데 작년에 특수한 사정 때문에 그런 게 발생했다는 거지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지성수** 예.

○**김동아 위원** 저는 철회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전문위원님께 문의를 드리면 이게 두 가지 사항으로 되면 무슨 차이가 있나요? 혹시 기관에 불이익이 생기는 건가요?

○**곽규택 위원** 그런 것 없어요.

○**소위원장 김한규** 조치를 하나씩 더 받아서 불이익이 생기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전문위원 이세진** 하나의 세부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서로 다른 내용으로 두 가지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중복으로 하셔도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제 생각에는 두 가지로 나뉘져 있으니까 이렇게 나눠서 둘 다 제도 개선으로 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곽규택 위원 예, 그러시지요.

○소위원장 김한규 갈 길이 먼데 그렇게 넘어가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0페이지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주진우 위원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주진우 위원님.

○주진우 위원 저는 이게 시정까지 한 이유가 지금 장기미제 관리나 각하 결정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 현재가 앞으로도 역할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너무 관리가 안 되거든요.

특히 21만 명이 집단으로 제기했던 게임법 위반은 제가 재작년 국감에서 한 번 지적했을 때 현재 사무총장이 신속히 결정하겠다고 했고 그다음 국감에서 ‘왜 1년이나 됐는데 처리가 안 됐느냐, 쟁점이 간단한데?’라고 했는데, 더더군다나 21만 명이 문제 제기를 하는 사건이잖아요. 뭔 가타부타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도 곧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또 아직도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언론의 관심이 있고 이런 사건들은 많은 사람을 투입해 가지고 그냥 다른 사건 다 중단하고 그 사건만 하다가 일반적인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건은 장기미제가 막 늘고 있는데, 지금 4년 경과한 사건이 74건이지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지성수 그게 작년까지 74건이었는데 올 7월 말까지 해서 42건으로 지금 줄고는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줄고 있어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지성수 예.

○주진우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꼭 특정 사건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각하 비중도 늘어나면서 그냥 장기미제가 동시에 늘다는 것은 좀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획기적인 개선 방안이 있는지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사무차장 지성수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판관 공석도 있었고 또 주요 관심 받는 사건들도 있었고 해서 사실상 다른 장기미제 사건들을 쉽게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 들어서 재판부가 정상화됐고 그리고 사건을 좀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연구부 조직 개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장기미제 사건이 사실은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잘 보장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장기미제 사건을 그래도 열심히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소원 사건에서 각하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부분은 사실 본안 사건에 집중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건 심사를 전담하는 부를 만들어서 본안에서 좀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들을 조금 엄밀하게 걸러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적법요건 단계에서 각하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본안 사건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안에서 꼭 판단되어야 할 사건들이 그 적법요건 미비로 사전 심사 단계에서나 각하로 종결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그 부분은 세심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은 주의 정도는 해야 개선이 되지 지금 사건이 몰린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그냥 쉽게 쉽게 털어 버린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 원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정이 과하다라고 하면 주의 정도 의견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 각하 결정이 많은 게 잘못돼서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적법요건 충족하지 못해서 각하하는 거라 그것 자체는 들어 보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제도개선 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이유는 뭘니까?

○**헌법재판소사무차장 지성수** 혹시라도 이게 적법요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잘 안내를 받지 못해서 적법요건 단계에서 각하가 되는 사태를 사실은 방지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민원실 상담이나 내지는 홈페이지에 적극적인 청구요건에 관한 안내 그다음에 국선대리인들을 상대로 한 헌법소원 전반에 관한 강의 이런 것을 통해서 본안에서 판단될 필요가 있는 사건들이 무심히 각하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제도개선을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건은 제가 없는 전반기 때 말씀하신 사안인 것 같은데 그런데 위원님이 여러 번 지적하셨으면 그래도 현재에서 내용은 어떻게 되더라도 절차는, 법사위원들이 지적하는 사건이고 그렇게 관련자가 많은 사건이면 신속히 처리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제도상 문제 때문에 처리를 못하는 겁니까? 그러면 제도개선이 맞는데 제도에 문제가 없는데 처리를 못 하고 있으면 이것은 다른 시정조치가 맞을 수 있거든요.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지성수** 그것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일이라 제가 선불리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그동안 저희 재판소에 청구된 일련의 사건들이 사실상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집중해서 해야만 되는 그런 사건들이었고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건들도 사실 뒤로 밀리는 형편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 초 같은 때에는 우려를 많이 표하시긴 하지만 재판소원이 도입돼서 그거를 정착시켜 가는 단계에서 일정 저희의 인적·물적 재원들이 그쪽에 좀 집중이 되다 보니 아마도 좀 장기미제 처리에 있어서 조금 뒤로 밀리는 상황이 발생한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재판부에 잘 전달해서…… 아마 사건 자체는 숙성이 돼서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처리, 결정 시기나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의 그런 우려를 잘 전달해서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기표 위원** 김기표입니다.

지금 장기미제가 증가를 한 것이 작년의 특수한 상황이 좀 개입돼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지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2025년 기준으로 4년 초과·경

과한 사건이 74건인데 올 7월까지의 사십몇 건으로 줄었다는 거지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지성수** 42건으로 줄었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면 올해는 작년과 같은 상황이 없어서 실제로 신속하게 오래된 사건을 지금 처리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까?

○**헌법재판소사무차장 지성수** 예.

○**김기표 위원** 그리고 각하,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 장기미제를 작년의 어떤 역사적인 특수한 상황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참작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법률적인 관점에서 각하에 해당하는 사유가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해결이 안 되면 결국 헌법재판소에 가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효율적인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위해서는 오히려 각하 제도가 활성화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9인 헌법재판관들이 다 모여서 본안을 심사하는 것보다는 예비적으로 각하의 어떤 문턱에서 정확하게 각하해 줄 것은 해 주고 9인의 헌법재판관들은 본안에 처리할 것만 정확히 집중하는 그런 방안이 오히려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주진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러한 어떤 특수한 사정을 생각하면 조금 제도개선 정도로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주진우 위원** 제가 제도개선은 수용하겠는데 하나 좀 분명히 할 것이 일반 국민들은 지금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은 사건 똑같이 제기를 하는데 갑자기 각하율이 올라간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재판소원 같이 지금 새로 현재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막 일을 끌어오면서 기존에 있던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설명 없이 기존에는 각하되지 않던 건들이 각하 관련된 전담 부서가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각하가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사건을 골라서 처리하는 방식이 돼서는 곤란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힘 없는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해 놓으면 국민들이 갑자기 남소를, 남발할 이유도 없는 거고 갑자기 늘어난 것도 없는데 각하율만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제도개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사무차장 지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주진우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니까 주진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하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잘 설명해서 갑자기 기준이 바뀌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제도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22페이지, 국외통신 운영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주의하고 제도개선으로 나누어져 있네요.

○**손솔 위원** 제가 주의로 의견을 냈는데요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예산집행율이 계속해서 저조해 지고 있어서 의견을 낸 것이고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인 건데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헌법재판소사무차장 지성수** 그러니까 국외통신원 제도는 사실상 저희로서는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지의 어떤 제도가 갑자기 변했다든가 내

지는 헌법적 이슈가 그 당시에 생겨났다가 이런 것들을 사실 심층적인 어떤 학술적인 연구나 이런 게 아니라 그거를 간단하고 빠르게 국내에 전달을 해서 저희가 그것들을 좀 더 심층 있게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정보를 공유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뉴스레터에 실려서 많은 분들이 그 부분 자료를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게 저는 존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게 계속해서 불용이 많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6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좀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불용에 대한 지적사항이 계속 있어서 그것 좀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특히 실적이 저조했던 이유는 갑자기 귀국하는 그런 분들이 한 두 분 생겼고 그다음에 박사학위를 써야 돼서 중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작년 같은 경우 부득이 이게 집행이 저조했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조금 제도개선을 통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실적을 고려한 재위촉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 부분은 저희는 존치를 원하는데 그 부분 제도개선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잘 제도를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솔 위원**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심사할 때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적절한 규모인지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의견이 모아진 것 같은데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 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세진**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결산과 관련하여 논의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주의 3건, 제도개선 9건 등 모두 11개 사업에 대해서 12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과 감사요구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해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심정희 수석전문위원님 정부 측 이견이 있는 사안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소위자료 보시겠습니다.

소위자료 1페이지에 보시면 심사 항목은 6개지만 6개 모두 기관에서 이견이 있어서 전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자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괄 부분인데요. 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포렌식 사업과 관련해서 뇌물수수 등 비리 의혹이 발견되었고, 공소유지 사건에 대해서 보석의견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균택·서영교 위원님께서, 시정요구 항목을 보시면 공수처는 포렌식 입찰 비리와 관련해서 전수조사하고 징계 등 엄중한 조치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공소유지 사건 전반에 대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그리고 보석의견서 미제출 사건의 관계자를 엄중할 것이라는 징계 요구 있었고요. 서영교 위원님이 장비도입계약 건들과 관련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와 자체감사를 강화하라는 제도개선이 있었습니다.

이것 각각에 대해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성과지표와 관련해서 지금 공수처는 성과지표로 디지털 수사 및 정보화체계 이용 만족도라고 지표를 설정하고 직원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성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균택 위원님께서 성과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책임자가 있으면 엄중 문책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으셨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정보화사업과 관련해서 정보화사업의 사건통계, 그러니까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사건통계관리 등 홈페이지나 시스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란에 보시면 김승원 위원과 박은정 위원님께서 정보화 사업에 대한 예산 확대가 수사업무의 체계적인 관리와 성과분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 제도개선, 누락된 세입·세출 자료를 조속히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시정요구 있었습니니다.

6페이지입니다.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과 관련해서 지금 공수처는 수사관들에게 통신비용을 일반수용비에서 월정액 4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사업에 대해서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고요. 연례적인 세목조정·전용, 사고이월 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을 보시면 네 분의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를 내 주셨는데요, 우선 수사업무 통신요금의 연도별 지급인원 및 증빙방법을 제출하고 집행 성격에 맞는 비목으로 편성·집행할 것, 제도개선, 공수처는 비목별 집행부진 원인을 밝히고 불용 포상금 활용 방안 등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보상체계를 활성화하고 예산편성 규모를 재검토 할 것, 시정 및 제도개선 중복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선택하셔야 되고요. 예산의 이전용 및 세목조정 등을 최소화할 것 등 제도개선이 있었습니다.

다음 5번, 9페이지입니다.

공수처 인건비와 관련해서 행정지원인력은 부족한 반면 예산 인건비의 불용액은 높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규모 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그리고 행정직원 정원 확대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행정 시스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나왔습니다.

마지막 6번 사항입니다.

공수처 기본경비와 관련해서 지금 지출 성격에 맞지 않는 일반수용비 집행 사례가 확인되었고요. 1명의 장애인 고용의무율은 계속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란에 보시면 공수처는 지출의 성격에 맞게 예산집행하라는 시정요구 내용도 있고요. 다음에 공수처는 장애인 의무고용율과 관련해서 의무를 준수하고 필요한 예산을 적절하게 반영할 것이라는 시정과 제도개선으로 나누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공수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은 겸허히 받아들여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셨듯이 저희 공수처 시정요구는 총 14건이며 이중 연번 1번의 시정 1 및 제도개선 7건은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연번 1번의 징계 1건은 주의로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부감찰이 진행 중인 사항이며 그 결과 및 개선방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번은 성과지표를 객관적이고 결과지향적인 지표가 반영되도록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공수처는 현행 성과지표 외에 국가재정법 취지에 맞게 성과지표를 개선하도록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도개선으로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번 3번의 세입·세출 자료 홈페이지 공개 관련 시정을 제도개선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공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번 4번의 내부 고발자 활성화 등에 대한 지적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시정과 제도개선으로 요구하신 사항으로서 제도개선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수처는 2026년부터 익명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고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연번 5번의 인건비 편성 관련 사항은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상 인건비는 정원을 산출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수용하여 신속 충원 등 공수처 결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번 6번의 지출 성격에 맞는 비목 집행은 시정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율 준수 등에 관한 사항은 시정과 제도개선으로 요구하신 사항으로 제도개선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비목에 맞게 지출하도록 집행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만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사항은 인력 증원이 담긴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을 고려하여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던 사항이며, 인력이 증원되면 장애인 공무원의 우선 채용하는 등 의무고용 준수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섯 가지 전부 다 이견이 있으므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2페이지·3페이지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지금 공수처에서는 내부감찰 중이어서 징계 요구를 주의로 변경해 달라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박균택 위원님.

○박균택 위원 차장님, 제 지적 내용에 좀 문제가 있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아닙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따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이의제기를 하십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징계를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잘못을 자체적으로 시정한 점을 감안하셔서 징계로 하신 것을 좀 수위를 낮춰 주십사 하는 요청입니다.

○박균택 위원 어느 기관이나 부정부리의 문제 또 업무과실의 문제, 사고의 문제 다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이 클수록, 인원이 많을수록 불가피하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겠지요. 요새 사실 경찰의 사건·사고가 많은 것도 경찰관들의 인격 문제나 자질 문제와 상관이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조직이 크고 인원이 많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공수처 같은 경우는 인원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어떤 업무의 분야도 너무 명백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수나 잘못이 생기기가 어려운 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급자들의 관리감독도 매우 쉬운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기관인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런 잘못이 일어날 것인가,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강하게 의견을 제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저는 건의 사항대로 수용할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의 영역이든 이런 행정의 영역이든 뭔가 정열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문화가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공수처가 일 처리가 뭔가 시원치 못하고 몇 년이 지나도록 이런 문화가 잘 정착이 안 되는 걸 보면 내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예.

○곽규택 위원 하나 여쭙보도록……

○소위원장 김한규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 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건 중에서 포렌식 입찰 비위 의혹 사건하고 보석의견서 미제출 사건하고는 별개인 거지요, 전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러면 포렌식 입찰 비위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신 거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예,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한 달여 전에 3명에 대해서 파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래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예.

○곽규택 위원 그러면 보석의견서 미제출 사건 이거는 지금 자체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겁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내부감찰 진행 중입니다.

○곽규택 위원 그런데 보석의견서라고 하는 거를 가끔 ‘적의 처리하기 바란다’ 해 가지고 의견서를 안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런데 이게 사안이 좀 중요했던 모양이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예, 언론에 보도되었고 해당 과에서 문서 수발을 잘못하는 바람에 해당 검사실에서 보석 기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하는, 저희가 누락한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고 어떤 경위에서 그 담당자의 과오가 생겼는지 감찰이 진행 중입니다.

○**곽규택 위원** 그러면 자체 징계를 하긴 할 사안이네요. 그렇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러면 하여튼 박균택 위원님께서 수용하신다고 그러니까 저도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이것을 정리해야 되는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원래 징계 요구하셨던 거는 징계가 이미 파면으로 다 된 건데 여하튼 그러면 주의로 낮추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서영교 위원님이 얘기하신 건 제도개선으로 그냥 두면 될 것 같은데요.

주의하고 제도개선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2번 항목입니다.

성과지표 실질화 필요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시정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관에 서는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 협의 중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박균택 위원** 이것도 같은 취지에서 기관의 의견 인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다른 분들 의견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3번 항목입니다.

정보화사업 부분인데요. 위원님들 두 분이 말씀 주셨네요. 시정과 제도개선으로 나눠져 있고 부처는 제도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제도개선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박은정 위원님은 서면으로 얘기하셔서 추가적인 의견을 듣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같은 내용이니깐 이걸 제도개선으로 넘어가시지요, 의견 없으시면.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4번입니다.

4번은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 주셨는데요.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시정과 제도개선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입니다.

곽규택 위원님만 시정 의견을 주신 사안이고 부처에서는 지금……

○**곽규택 위원** 제가?

○**주진우 위원** 박균택 위원님.

○**소위원장 김한규** 죄송합니다.

○**곽규택 위원** 사과하세요.

○**소위원장 김한규** 사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균택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셨고요. 정부에서는 익명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2026년에 마련해 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박균택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예, 다수 의견대로 따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5번, 공수처 인건비 예산 편성인데요. 역시 위원님들께서 주의와 제도개선으로 나눠져 있고 부처에서는 제도개선…… 정원으로 산출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예산 불용이 있었다, 신속히 충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진우 위원 제도개선에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주진우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위원님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6번 사항입니다.

역시 시정과 제도개선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고요. 공수처에서는 향후 제도개선하고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인력 충원 법안이 계류돼 있어서 예산 편성을 못 했다고 했는데요.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동아 위원 지금 인력이 이미 20명이 다 찼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이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예, 그런 측면도 있고 행정직원 정원을 4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상태여서……

○김동아 위원 20명 다 채울 때 1명 고용했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게 법인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저희가 출범 당시에 장애인을 채용하지 못해서……

○김동아 위원 출범 당시에 채용한 인원들이 지금까지 다 계속 근무하고 있나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행정직원 전입 추진 시에 2025년 1회, 2026년 1회 장애인 공무원은 우대를 추진하였지만 해당 지원자가 없어서 현재 미고용 상태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아 위원 장애인 공무원이 지원해야 되는 건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김동아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다른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도 질문드리면 지원자가 없으면 장애인이 아닌 분으로 고용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그냥 공석으로 두고 계속 장애인 의무고용률 충족을 위해서 추가 공모를 하게 됩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장애인이 아닌 분을 채용하게 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키지 않은 건 맞는데, 제도개선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저희가 행정직원 정원이 법률상 20명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저희 규모에서 1명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는 것에서도 사실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지난번에 결원에서 채용을 할 때 지원자가 없었던 경우도 있고요. 수사관이기 때문에公安직이라서 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에는 산정되지 않지만 장애가 있으신 저희 쪽 수사관도 근무 중인 분도 있긴 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아니, 그런데 인력 충원을 하면 지원자가 없어서 계속 비율이 더 낮아질 거 아닙니까? 충원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그래도 행정직원이 증원이 되면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질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잘 모르겠는데요.

○김기표 위원 지원자가 없는데 40명으로 늘리면 장애인이 지원을 하나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장애인 지원자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니까요.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서……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지원을 하라고 하면 정보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지원을 요청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국가기관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장애인 단체나 이런 쪽에도 이런 게 있다고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냥 지원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응당 마땅한 대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도개선을 좀 해 보세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그냥 공고만 낼 것이 아니라 장애 관련 기관 같은 곳에……

○김기표 위원 업체나 이런 데 정확히 알려서 이런 게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왜 없겠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두 가지인데요. 이 6번 항목의 하나는, 장애인 부분은 지금 논의가 됐는데 시정요구 중에 첫 번째, 다른 세목에서 우선 집행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좋겠는데요. 광규택 위원님께서 시정을 하자고 제안하신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 의견은 어떠신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저희 비목 집행과 관련해서 우편요금 등을 일반수 용비로 집행하는 등의 잘못된 사례가 없이 지출 성격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향후 집행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광규택 위원 이것 제도개선 의견을 냈던 것 같은데.

○소위원장 김한규 제도개선으로 동의하신다는 얘기이십니까?

○광규택 위원 예.

○소위원장 김한규 수석전문위원님, 광규택 위원님께서 두 가지 제도개선으로 동의하신다고 해서 이거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예. 그러면 두 가지 항목 다 제도개선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광규택 위원 예.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공수처 소관 결산 논의사항 정리해 드리면 시정 1건, 주의 1건, 제도 6건 총 8건을 수정 요구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해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법원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도 전문위원님, 정부 측 이견이 있는 사안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입니다.

심사 자료 2025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자료입니다.

1쪽, 개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안은 총 31건이고요. 세부적으로 시정 2건, 시정·주의 또는 제도개선 1건 이런 건들은 중복해서 시정요구가 제시된 내용입니다. 시정 또는 주의 2건, 주의 9건, 주의 또는 제도개선 5건, 제도개선 12건입니다. 시정요구안 31건 중 23건은 부처가 이견 없이 수용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음영 표시가 된 부분이 있는데 음영 표시 8건은 시정요구 수준이 중복적으로 제시돼서 부처 의견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만 1쪽의 5번 그다음에 2쪽의 13번, 15번, 16번, 17번, 3쪽의 19번 그리고 25번은 시정요구 유형 여러 개 중에서 법원행정처에서 보다 높은 시정요구 수준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정요구 더 높은 것을 받아들이는 법원행정처 의견을 받아들이신다면 24번에 대해서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다 하셨나요?

○전문위원 최기도 예.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법원 의견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좀 전에 법원에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서 방금 위원님들께 나눠 드렸습니다. 법원 의견 들으실 때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장님, 법원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법원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여러 지적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대부분 다 높은 단계의 의견을 수용하여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정요구명 24번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신축사업 관련해서는 행정절차 지연된 부분 때문에 당초 일정보다 사업이 지연되어서 지적을 받았습시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현재 조달청에서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이고 올해 7월 20일 자로 설계가 재개되었습니다.

향후 전반적인 사업관리 강화해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 부분만큼은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들으신 대로 다른 부분들은 다 결국은 위원님들 의견 수용을 하시고 한 가지, 28페이지의 24번이지요?

○전문위원 최기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께서 시정, 주의, 제도개선으로 의견이 나뉘는데 이 부분만 법원행정처에서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십사 부탁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먼저 손술 위원님.

○손술 위원 제가 주의 의견을 내서요.

그러면 7월 20일 자로 설계 재개되면 이후 과정은 어떻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설계가 마무리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착공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술 위원 대략적으로 언제쯤 결정이 된다 이런 게 나온 게 없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그것까지는 좀 더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술 위원 어쨌든 재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그렇습니다.

○손술 위원 제도개선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감사합니다.

시정요구하신 분은 이 자리에 안 계신데 그러면 손술 위원님이 제도개선에 동의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제도개선으로 진행해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다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논의된 내용 전문위원님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지금까지 대법원 소관 결산과 관련해서 논의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시정 4건, 주의 14건, 제도개선 13건 등 총 31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의결 전에 하나만 좀……

○소위원장 김한규 김용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 지금 여기에 지적된 건 아닌데 어제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된 것에 대해서 현금성으로 격려금을 계속 지급했던 거에 대해서 그래도 해명을 좀 듣고 의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김한규 차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감사원 지적사항이 뭔지부터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모르는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대법관들에게 격려금을 정액으로 지급

한 부분이었습니다,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에게. 그 부분에 관해서 격려금을 차등해서 지급해야 되는데 일정액을 지급한 것은 격려금의 규정 취지에 반한다라는 게 감사원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작년에 감사 때부터 그 말씀을 듣고 사실 저희가 이번 여름부터 그 부분을 시정해 나가서 그 격려금 취지에 맞게 차등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지금 제도개선을 준비 중에 있고 일부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오늘은 아니더라도 좀 제출을 해 주세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나중에 정리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아 위원** 저도 하나만.

○**소위원장 김한규** 김동아 위원님.

○**김동아 위원** 제가 변호사들한테 받은 많은 민원 중의 2하나가 전자소송 관련해서 일반 민사 전자소송은 그런대로 계속 업데이트가 나아가고 있는데 회생·파산 관련된 전자소송은 너무 많은 민원이 몇 년간 있지만 회생법원 판사님들조차도 이걸 법원행정처에 건의하는데 계속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나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서울회생법원에서 판사분들하고 파산관재인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전자소송 개선 방안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그 관련된 것 한번 보고받으시고 전자소송 관련된 시스템 업데이트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손솔 위원님.

○**손솔 위원** 그런데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이 ‘차등해서 줘야 하는데 차등해서 주지 않아서 문제다’가 감사원 지적의 핵심인가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손솔 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소위원장 김한규** 그 부분은 김용민 위원님이 요청드린 대로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오늘 결산하고 직접적인 건 아니니까 결산은 처리하고 전체회의 때 필요하면 추가 논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대법원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금까지 논의한 시정요구 사항을 첨부해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원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윤상열 전문위원님, 정부 측 이견이 있는 사안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열 전문위원입니다.

감사원에 대해서는 총 18건의 시정요구를 위원님들께서 주셨습니다.

이 중 5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서로 다른 수준의 시정요구를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측 입장을 들으시고 어떤 수준으로 시정요구를 할지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자료 9페이지 3번, 심사청구의 신속한 처리 및 법정기한 준수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의 심사청구 이월 건수가 2025년에 2024년 대비 41.4% 증가하는 등 다수 청구가 당해 연도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심사청구 처리일을 제고하고 법률상 기한을 준수하여 국민의 청구권이 신속히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시정요구사항을 세 분의 위원님들이 주셨는데요. 손솔 위원님은 주의 수준을, 박은정 위원님, 주진우 위원님은 제도개선 수준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8번, 피감사자 권익 보호를 위한 디지털포렌식 제도개선 관련 사항입니다.

감사원이 2022년 6월 디지털포렌식 실시 요건을 일부 완화하면서 건수도 늘고 무분별하게 수행되는 측면이 있어 대상자들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디지털포렌식의 실시 요건을 명시하는 등 법령 개정 및 별도의 선별실 마련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을 다섯 분의 위원님이 주셨는데, 서영교 위원님은 시정 수준을 제기해 주셨고, 박규택 위원님, 김승원 위원님, 김한규 위원님, 손솔 위원님은 제도개선 수준의 시정요구를 제기하여 주셨습니다.

다음 17페이지 9번 사항입니다. 업무포털시스템(OASYS) 구축·운영 사업의 철저한 관리감독입니다.

2024회계연도 국회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일정 지연과 대규모 이월이 다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국회의 시정요구에도 사업 지연 및 예산 이월이 반복된 원인을 점검하고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일정 및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하며 사업 단계별 예산 집행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는 시정요구를 세 분의 위원님이 주셨는데 박규택 위원님은 주의 수준을, 김기표 위원님, 김승원 위원님은 제도개선 수준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집행 필요성이 소멸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위한 이월 지양입니다.

정보화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사무실 임차를 위해 편성한 1억 1500만 원을 집행 필요성이 소멸하였음에도 전액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이월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당초 편성 목적이 소멸하여 집행 필요성이 없어진 사무실 임차료 예산의 이월·집행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시정요구가 세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제기되었는데 김기표 위원님, 김민진 위원님은 시정 수준을, 박규택 위원님은 주의 수준을 제기하여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15번, 연구용역비의 이월 방지를 위한 연구과제 조기 선정과 관련해서 정책연구 용역비가 2023년부터 매년 3000만 원에서 8400만 원 정도의 이월이 발생한다는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정책연구비의 연내 집행을 위해 연구수요를 조기에 발굴

하고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연구과제·연구자 선정 시기를 앞당기는 등 집행방식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두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제기되었는데 손솔 위원님은 주의 수준의 시정요구를, 광규택 위원님은 제도개선 수준의 시정요구를 제기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전문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입니다.

지적해 주신 총 8건의 지적에 대해서는 지적 내용을 저희가 겸허하게 수용하고 향후 예산 집행이나 관련 업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해 주신 5건에 대해서는 각각 2개의 개별 시정요구(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안이 동일하므로 하나의 제도개선으로 합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3번, 8번, 9번, 15번의 경우에 주의와 제도개선이 같이 병합돼 있는데 제도개선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번의 경우에는 시정과 주의로 돼 있습니다마는 문안이 동일하므로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페이지 3번 사항부터 의견 부탁드립니다. 주의하고 제도개선으로 나뉘져 있습니다.

○손솔 위원 제가 주의 의견 제출했는데요.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저희가 심사청구 처리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번에 직제 개편을 하면서 기존의 2개 과에서 1개 과를 더 늘려서 3개 과를 하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풀을 또 50명 이상 구성해서 속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는 앞으로 잘해라 하는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우리가 방안도 마련했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손솔 위원 현재 50명 이상은 됐나요, 아니면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시라는 거예요?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우리가 심사청구 쪽을 전담하는 과가 2개인데 3개 과로 하면서 이제 이게 주로 세제를 담당하다 보니까 전문가 풀을 50명 정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손솔 위원 현재 되어 있다는 말씀……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아니……

○손솔 위원 할 계획이……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예, 계획입니다.

○손솔 위원 그거는 올해 안에 하시는 계획이세요?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예, 올해 하반기에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다른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3번은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8번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지금 서영교 위원님이 시정요구하셨는데 제도개선에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의견 주셨으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17페이지 9번 사항입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곽규택 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소위원장 김한규** 곽 위원님.

○**곽규택 위원** 이거 오아시스 사업 하시면서 2년 연속으로 지금 좀 큰 규모의 이월액이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금년 10월 달로 이게 사업 완료 예정일이 돼 있던데 10월 달에 마무리되는 건 맞습니까?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예, 맞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러면 왜 이월액이 자꾸 발생했었나요?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아시다시피 이게 2년 사업인데요. 첫해는 인프라를 깔고, 두 번째는 그 이후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업인데 작년도에 정보자원관리원에 화재가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에 납품하는 소프트웨어가 장착이 늦어졌습니다.

○**곽규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는 걸로 하고 한 가지만 다른 거 여쭙볼게요.

법원의 대법관들 월정 격려금을 갖다가 뺐다 해 가지고 감사원에서 지적이 있었다고 언론에 났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사무총장님?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조금 전에 법원 쪽에서는 대법관들 사이에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대법관들에게 모두 균등하게 차등을 안 두고 격려금을 지급한 것이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거를 바꾸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이 그런 내용인 거 맞습니까?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위원님, 그런데 지금 격려금이라는 거는 우수부서 직원에 대해서, 어떠한 특별히 잘한 성과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현금을 매달 200만 원씩, 300만 원씩 주는 거는 과거에 2019년도까지 지급하던 특활비를 대체하는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러면 차등을 안 뒀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주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하셨다는 말씀인가요?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렇습니까?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예.

○**곽규택 위원** 대법관들에게는 격려금을 주면 안 되나요?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대법원장이 대법관에게 격려금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직원, 여러 일부 직원들도 많은데 그러면 다른 직원들, 평직원들한테 매달 200만 원씩 준 사례를 낼 수 있다면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곽규택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감사합니다.

그러면 17페이지는 정리를 하고 19페이지 10번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정과 주의로 의견이 나뉜 부분인데요.

○김기표 위원 김기표입니다.

제가 시정이라서 한 가지 좀 질의드리면 이게 지금 개발인력이 상주할 사무실을 임차할 용도로 실제 감사원에서 1억 1500만 원을 잡았는데, 그러니까 사무실로 임차한 게 아니고 감사원에서 쓰도록 했다는 거 아니에요, 개발인력을?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예.

○김기표 위원 그래서 임차료가 쓰이지 않아서 지금 사실 불용처리를 해야 될 것을 이월로 해서 다른 항목으로 썼다 이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것은?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예, 그 1억 1500을 가지고는 사무실을 임차할 수 없어서 저희 내부 공간을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1억 1500이 남았는데 같은 임차료 항목인데 저희가 장비 임차료로 하는 걸로 했는데 장비가 제때 납품이 안 되다 보니까 이월이 된 겁니다.

○김기표 위원 사무실 임차료를 장비 임차료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나요?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같은 비목이기 때문에 그건 가능합니다.

○김기표 위원 같은 비목이라 가능합니까?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가능합니다.

○김기표 위원 그게 감사 지적사항은 아니에요?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정부에 보면 국가재정법에 근거해서 예산집행지침이 있습니다. 집행지침에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고. 그에 따라서 한 겁니다.

○김기표 위원 법적으로 그런 집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예, 가능합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면 왜 굳이 사무실 임차료라고 합니까, 그냥 사무실 물건·집기들 임차료 항목으로 할 것 같은데. 예산을 굳이 그렇게 편성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가능하면 다른 항목, 좀 큰 개념으로 하겠지요.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하고 집행하는 시기가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는 한 1억 1500 정도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었는데 그걸로 그 지역에 사무실을 구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저희 공간을 내주었고요. 그래서 그 비용을 저희가 장비 임차료로 사용을 했던 것인데요.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이월을 했던 겁니다.

○김기표 위원 제가 ‘그게 맞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면 다른 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마치 그걸 똑같이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 어이가 없는데요.

그것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지금 사업이 늦어지니까 향후에, 내년에도 혹시 사무실 임차료 수요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월시켰다 이런 거면 제가 수용이 가능할 텐데 그게 아니고 마치 다른 걸로 전용이 가능하다는 듯이 답변하는 것은 그건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그 답변이 맞는지. 그럴 거면 뭐 하러 예산을 그렇게 세우겠어요?

그래서 저는 시정요구로 한 것인데 이것은 시정해야 되겠는데요?

○소위원장 김한규 그런데 제가 전문위원 통해서 받은 자료에 보면 감사원에서는 의견

을 주의로 요청을 하셨는데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시정과 주의로 나뉘어져 있어서.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전혀 위법하고 부당한 게 아닌데 전용할 수 있으면 그러면 주의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원이 주의는 수용하겠다는 거 하는 것은 그렇게 이월하는 게 문제라고 판단해서 주의로 정해 달라는 것 아닌가요? 어떤가요?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저희가 규정상으로는 사실 위반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공간을 임차하기로 돼 있던 것을 장비 임차로 바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국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위법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저희가 봤을 때 사무실 임차를 시설 임차로 쓰려고 했다는 것 자체도 부당하니까 주의 정도로 정리하면 어떨까요, 김기표 위원님?

○**김기표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광규택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주의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광규택 위원** 잠깐만요, 하나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김기표 위원** 답변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광규택 위원** 사무실 임차료라고 하는 항목에 있는 걸 다른 시설이나 장비 임차료로 전용이 가능하냐? 이걸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전문위원께서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전문위원 윤상열**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규택 위원** 다른 부처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 지적이 많이 되거든요.

○**김기표 위원** 일단 주의로 하시고요. 그건 답변 내용을 확인해 보시지요.

○**소위원장 김한규** 주의로 하시고 필요하면 전체회의 전까지 확인해서……

○**김기표 위원** 예, 그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김한규** 시정 내용을 바꾸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 근거랑 제시해 주시고.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예.

○**김기표 위원** 사실 감사원에서 만약에 그게 잘못된 답변이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예, 저희가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다음으로 27페이지입니다.

마지막 15번 사항인데요. 위원님들 주의와 제도개선으로 의견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손솔 위원** 이게 여러 연도에 걸쳐서 문제가 똑같이 발생한 거라 주의를 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저희가 연구용역을 상반기·하반기에 나눠서 합니다. 상반기에 다 해 버리면 하반기에 감사활동에 필요한 연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9월에 주로 이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열게 되는데 열고 나서 그다음에 계약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이월이 좀 될 수밖에 없는 약간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집행을 좀 더

당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술 위원** 시기를 조정하신다는……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예, 시기를 좀 더 당겨서 9월이 아니라 7·8월 정도로 당겨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손술 위원** 지금까지 9월에 했던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그러니까 상반기·하반기 감사사항이 있으니까 그 감사에 필요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걸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손술 위원** 그러면 그게 시기를 당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내부에서 프로세스를 좀 더 당기는 거니까 그것은 저희가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술 위원**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저도 항상 이런 예산 보면 이상한데 이렇게 하다 보면 10월·11월에 과제가 생겨도 내년으로 넘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올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때 계약 체결하고 12월까지 보고서가 오고 예산집행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내년도에 쓰지 못하는.

그래서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위원님께서 의견 모아 주시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열** 감사원에 대해서는 총 18건의 시정요구를 하는데 시정 1건, 주의 7건, 제도개선 10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부대의견은 따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해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총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법무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면 법무부장관은 공석이고 법무부차관이 장관직무대행인데요. 오전에 국무회의 참석 일정으로 인해서 기획조정실장이 대리 출석하는 걸로 제가 미리 양해를 했더라는 점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차범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심정희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법무부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항목은 총 54개 항목이라 실·국별로 좀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초실 소관과 법무실 소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10페이지입니다.

기조실 소관인데요.

장애인고용부담금 관련해서 매년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서 삼사억 원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고 매년 금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시정요구(안)에 보시면 법무부는 의무고용률 제고를 통해서 부담금을 최소화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김기표, 김용민, 박은정, 손솔 네 분 위원님이 주의를 주셨고요.

두 번째 보시면 법무부는 검사직 등 장애인 고용의무대상이 아닌 직군의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주의로 두 분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법무부는 KICS 유지·관리의 목적으로 관리용역비, 일반연구비를 쓰고 있는데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을 작년에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안)에 보시면 법무부는 국회 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을 집행, 정보시스템의 신규 구축 사업비로 편성했는데 이런 것을 지양하고 그 사업의 타당성 및 총소요 경비에 대한 국회 심사를 받을 것, 편성 단계에서 주의를 기울이라는 말씀이고요. 여기서 주의와 제도개선으로 나뉘어지고 있어서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법무실 소관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국가배상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국가배상금 예산액은 1317억 6500만 원인데 이·전용 증액 그리고 예비비를 써서 총 4372억 79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시정요구(안)에 보시면 법무부는 국가배상금 예측 추계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고, 27년부터는 예비비 및 지연손해금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 시정요구 내용이고요.

다음, 네 번째 마지막 24페이지에 보시면 법무실 기본경비와 관련해서 실무수습변호사와 관련된 예산의 불용이나 결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으로는 실무수습변호사 결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원인 파악 및 실태조사,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실무수습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세부적 지침을 마련할 것, 여기서 주의와 제도개선으로 유형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선택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이렇게 실별로 진행을 할까요?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예, 검찰국이 좀 많아서요.

○소위원장 김한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의견 있는 안건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 장애인고용부담금 최소화 필요 관련해서는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 제고를 통해 부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으나 두 번째 부분인 장

애인 고용의무대상이 아닌 직군의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적 제외를 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유도 말씀을 드리면 공안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민의 신체와 자유·생명을 지키는 긴급 대응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체적·물리적 대응이 불가피한 현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에서는 검찰 쪽을 말씀을 주셨는데 공안직 공무원에는 교정시설이라든지 보호관찰 그리고 출입국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면, 지금 장애인고용법상에 공안직 공무원이 포함된 취지가 들어 있어서 그 부분은 법상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예산집행이……

○소위원장 김한규 기획조정실장님, 죄송한데 분량이 많다 보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나중에 위원님들 질의하면서 답변을 해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유까지는 상세하게 설명 안 해 주셔야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다음 항목.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7번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에서 제도개선으로 낮춰 주셨으면 합니다.

국가배상금에 대한 걱정 예산을 편성하여 지연손해금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는 공감하지만 예산집행이 위법·부당한 경우가 아니므로 이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11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다른데요. 주의하고 제도개선으로 나뉘는데 기관 의견이 없다라는 것은 그냥 위원회 결정을 따르겠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예, 가급적이면 좀 낮은 단계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순차적으로 네 가지, 10페이지부터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그러니까 공안직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의 무대상이라는 건가요, 아니라고 얘기한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것 약간 끝을 흐리셔 가지고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장애인고용법상 공안직 공무원이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그 법의 취지를 보니까 공안직 공무원이 검찰직뿐만 아니라 다른 보호직이나 출입국이라든지 교정직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까지 고려한다고 보면 저희가 제외를 하는 게 일응 타당한 것 같고, 그런 점을 참작해 주시라는 말씀……

○김용민 위원 지적에는 ‘검사직 등’이라고 돼 있어서 포함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예, 그 지적에는 공감합니다.

○김용민 위원 그래서 아까 결론이 뭐였어요? 이게 제도개선으로 하자는 건가요, 아니

면 아예 지적을, 시정 요구를……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지금 현행법에 따라서 제외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 집행 자체는 위법·부당한 내용이 아니어서 지적에서 제외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김용민 위원** 아니지요. 지금 법무부에서는 장애인, 그러니까 공안직 이외에 다른 직군들도 있는 것 아닌가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예, 첫 번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 없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고용의무대상이 아닌 직군.

○**김용민 위원** 이것은 제외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제도개선 정도로 고민해서 취지를 법무부가 가지고 와야지 일단 지적에서 제외를 해야 된다는 것은 좀 이상한 것 같거든요, 말씀하신 게.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니까 취지가 실장님 얘기는 긴급대응이나 현장 업무를 하는 직책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긴급대응현장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직책 중에서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고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제도개선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

○**김용민 위원** 취지가 그거인데 지적에서 제외해 달라는 게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김한규**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첫 번째 동그라미는 주의사항으로 하고, 두 번째 부분은 표현을 좀 바꿔서 제도개선으로 하는 걸로 위원님 괜찮으시면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페이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주의하고 제도개선으로 나눠져 있네요.

법무부는 어떠신가요? 이 부분……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시정요구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주의 의견 주신 위원님들께서 혹시 제도개선에 동의하실까요?

김기표 위원님.

○**김기표 위원** 이것도 예산 전용의 문제이긴 한데 일단 이거는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시지요.

○**소위원장 김한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8페이지의 7번 사항입니다.

○**김기표 위원** 김기표입니다.

이 부분도 답변하신 거 보니까 지난해에 1811억 원 정도를 증액을 요청했는데 예결위 소소위에서 거부됐다는 거잖아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예, 부결됐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런데 현황을 보면 예비비가 벌써 3053억이 쓰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예산 증액을 한 것, 추계한 것보다도 더 쓰이고 있잖아요, 1200억 이상이 쓰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추계가 조금 어렵지요? 추계가 어려

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전체 상임위원회에서도 다시 한번 지적하겠지만 이게 추계가 어렵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면 아예, 만약에 법원의 확정 판결이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예비비에서 빨리빨리 지급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도 보완해야 된다, 법을 고쳐서라도. 법무부가 그런 고민도 안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계 어렵다는 것에만 머무르지 말고 이게 만약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예비비에서 뺏을 때 어떻게 신속하게 하루라도 이자 아끼고 그다음에 피해자는 돈을 제대로 받아 갈 수 있을 건가 이걸 고민을 하라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시정’이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했는데 제도개선안을 진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도개선으로 해 드릴 테니 업무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예비비가 이렇게 해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어떻게 하면 아이디어가 가능합니까, 행정부에서 이런 걸 고민해야지요.

○소위원장 김한규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김용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 이 부분은 저도 전체회의 때, 당시 정성호 장관께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국가배상 판결에 승소한 피해자들이 국가배상금을 청구하니까 법무부가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 예비비로라도 빨리 해 달라라고 하니까 내년에 하지 그때까지 못 하겠다 그래서 지연 이자 법무부가 알아서 나중에 내겠다 이런 식으로 배째라 해서 피해자 단체에서 기자회견하고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하니까 그제서야 움직여서 예비비에서 지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의 태도 자체가 이거는…… 저는 지금, 김기표 위원님 제도개선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제도개선 이상으로 시정이나 주의나 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태도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잘 고민하시고 반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표 위원 간단하게 한말씀만 더 드리면 재정위나 이런 데서, 아무튼 예비비나 이런 걸 쓰는 것을 고민해야 되겠지만 각 부처에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제기를 해 줘야 전체 행정 각 부처에서 할 일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고민을 좀 해 보십시오. 법무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아이디어 내면 바로바로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해야지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8762억을 이번에 요구안을 제출했는데 정부안으로 8400억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는 걸로 보고.

다음 마지막으로 24페이지, 9번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의하고 제도개선으로 나뉘네요.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손솔 위원 손솔입니다.

불용액이 발생을 한 건데 어떤 방식으로 제도개선 고민하고 계시는지 먼저 말씀을 해주십시오.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이 부분은 실무수습 변호사가 중도에 취업이라든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탈하게 돼서 발생하는 공백인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수습을 할 때 대한변협하고 협의해서 그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솔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다고 하시는 거지요? 이거는 다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소위원장 김한규** 그래도 위원님들 문제 제기를 해 주셨으니까……

법무부가 매력적인 실무수습 장소면 이탈이 적겠지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제도개선으로 다 의견을 모아 주셨으니까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참고로 오늘 오후에 전체회의가 있어서 오늘 처리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논의하는 게 어려워져서 양해해 주시면 조금 12시 넘어서라도 논의를 하는 게 어떨까. 안 그러면 전체회의 4시 전에 본회의 끝나자마자 다시 모여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논의한 걸 정리해서 전체회의 때 보고하려면 좀 빠듯할 것 같긴 합니다.

○**곽규택 위원** 전체회의를 4시에 한다는 얘기지요?

○**소위원장 김한규** 하도록 돼 있지요.

○**곽규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오늘 날씨가 개 갖고 사진을 찍을 것 같아 갖고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빨리, 점심시간을 조금만 미뤄 주시고 논의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다음 검찰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찰국과 관련해서 10개의 사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자료 46페이지입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25년도 특수활동비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추경예산 부대의견에서 특수활동비는 검찰 개혁 입법이 완료된 이후 집행한다라는 부대의견이 있어서 25년도 특활비는 전액 미집행되었고 특경비는 추경으로 복원된 다음에 일부 또 불용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란을 보시면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편성 규모를 필요 최소한 규모로 편성할 것, 여기서 위원님들 간에 주의와 제도개선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의 집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 주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법무부와 검찰청은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의 건별 집행 자료와 증빙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고 검찰 기능 개편에 맞춰 편성 대상, 지급 방법, 증빙 기준을 전면 재정비할 것,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검찰국 소관 전체 예산이 1조 2534억 1200만 원인데요 지적 사항을 보시면 저희가 관련된 결산 자료들을 거의 제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출대장, 지급대장 요구했으나 받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료를 보면 사업별 집행 총액만 명시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결산 분석 자료도 못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제출하고 있지만 검찰청 같은 경우는, 특히 검찰과 관련된 결산 자료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해서 50페이지의 시정요구사항 보시면 법무부는 검찰국 소관 사업의 예산집행 건별 세부내역 자료를 조속히 제출할 것, 서영교 위원님이 주의를 요구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성운 위원님께서 검찰국 소관 사업의 수사기밀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예산집행은 건별 세부내역을 국회에 제출하고 수사기밀이 포함된 자료는 비식별화·비공개 열람·보안 서약 등의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것, 시정으로 요구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직책수행경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법무부 예산은 집행하면서 국회에서 심의하지 않았던 15년 이상 검사에 대한 직책수행 경비를 증액해서 지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보시면 국회가 심의하지 않은 직책수행경비 지급 구간 신설이나 단가 인상 등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집행 절차와 내부 통제를 강화할 것, 주의가 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넘어가시겠습니다.

검찰 용역비와 관련해서 법무부와 검찰청은 일반용역비와 일반연구비, 정책연구비 항목 등을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에 보시면 법무부와 검찰청은 검찰관 관련 용역사업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일반용역비, 일반연구비, 정책연구비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편성·집행할 것이라고 주의와 제도개선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성운 위원님께서서는 정책연구에 해당되는 용역은 관계 규정에 따라 심의·등록·공개할 것, 주의가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과 관련된 통보 비용의 집행 실적이 매년 저조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란에 보시면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 비용을 실소요보다 과다 편성하여 집행 잔액이 대규모로 발생하거나 그 잔액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인데요 주의와 제도개선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특정범죄신고구조금과 관련된 내용인데 집행률이 매우 실적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특정범죄신고자구조금이 2025년에 1700만 원만 집행돼서 6200만 원 예산 중에 1700만 원만 집행되었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으로는 특정범죄신고자구조금의 신청, 심사, 지급 및 미지급 현황을 단계별로 분석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지급 요건 및 신청 절차 개선, 일선청 담당자 교육, 대상자 적극 발굴·홍보 강화 등을 통해 구조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김기표 위원님과 이성운 위원 간에 주의와 제도개선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마약수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마약수사 예산액이 18억 7500만 원인데 집행 실적이 저조하고요. 지급 건수도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시정요구란에 보시면 마약수사 사업의 일반수용비 집행 부진 사유를 세부 항목별로 면밀히 검토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조정하거나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시정요구유형이 손솔 위원님 주의, 김기표·주진우 위원님 제도개선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 80페이지로 넘어가시겠습니다.

형사보상금과 관련된 내용인데 예산액이 420억, 이·전용 증액 425억 5400, 예비비 429억까지 써서 1274억 5400만 원이 집행된 부분입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보시면 국회가 동일한 사항을 지적했음에도 예산 추계의 부실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 업무를 철저히 점검하고 담당자를 징계 조치할 것이라고 박형수 위원님이 징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란에 보시면, 법무부는 재심·무죄 사건 및 관련 보상의 집행 상황과 연도별 집행 실적 추이 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적정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고 형사보상금 지급 사유와 증가 원인을 사건 유형별로 분석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손솔 위원님 주의, 김민전·김승원·이성윤 위원님 제도개선으로 나누어서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세 번째 란에 보시면, 형사보상금 부족금 충당을 위한 이·전용으로 감액된 다른 사업들 집행 차질 내역을 전수 점검하고 다른 사업에 대한 정상 추진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회계연도 말에 다수 사업의 잔여 재원을 일괄 회수하는 방식으로 전용하는 것을 지향할 것이라고 김동아 위원님, 주의로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검찰 운영 인건비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전용 재원으로 활용되는, 그러니까 전용, 감액돼서 활용되는 게 매년 증가하고 있어 불용액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시정요구 내용으로는 법무부와 검찰청은 인력 변동 요인과 최근 집행 실적 등을 반영해서 인건비 소요액을 보다 정확하게 추계함으로써 인건비 예산의 불용 및 다른 사업으로의 이·전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박은정 위원님 시정, 이성윤 위원님은 제도개선 수준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에 88페이지, 마지막 사항입니다.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예비비 부분인데요.

조은석 특별검사, 이명현 특별검사, 민중기 특별검사가 사용한 내용인데 각각 3명의 특별검사가 사용한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시정요구안에 보시면 ‘법무부 및 3대 특별검사는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국가기관도 모두 결산심사 대상이라는 원칙에 따라 익명처리, 비공개 열람, 항목별 제출 등의 방식을 통해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주진우 위원님께서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수석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검찰국 외의 나머지 국이나 본부도 뒤에 더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항목이 3개라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예.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들어야 되는데요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일괄해서 듣는 것보다 하나씩 듣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46페이지지요?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예.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에서 하나씩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22번 항목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듣고 위원님 의견 듣고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22번 지적에 대해서는 지적 제외를 요청드립니다.

사유는 2025회계연도의 특활비의 경우에는 지난번 부대의견에 따라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액 미집행하였고요. 향후 공소청 출범 이후에 변화된 검찰의 기능을 고려해서 특활비라든지 특정업무경비의 집행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집행이 위법·부당한 경우가 아니므로 지적 제외를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손솔 위원님, 올해는 전액 미집행했으니까 이번 건들은 다 지적사항에서 제외해도 되지 않을까요?

○손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어떠신가요, 다른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갈 길이 멀어서 양해해 주시면 이건 제외하고 다음, 49페이지 23번 항목 법무부 의견 부탁드립니다.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23번에 대하여는 시정요구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하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사유는 그동안 저희가 결산 과정에서 세부내역을 제출하지 못하였는데 올해부터 지적하신 내용을 일부 반영해서 수사기밀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전향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서 제출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50페이지까지 이렇게 봐야 되네요. 50페이지에 보면 정부 측 의견은 이성운 위원이 시정이라고 제시한 그 내용을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 제가 이것 정말 많이 반복해서 지적하는데요. 국회 증감법 4조 1항에 보면 서류 제출 요구를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어요.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장관이 소명하는 경우에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뭔데 계속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 제도개선이 아니라 징계해야 됩니다. 원래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 증감법상

처벌까지 가능한데 지금 제도개선으로 통치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징계해야 됩니다, 이것. 저는 징계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다른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주의하고 시정 요구를 서면으로 의견 내신 분들이 있고요 지금 징계 의견이 있는데요.

정부 측에서 수사기밀이 포함된 자료를 비식별화나 이런 방식으로 제출하지 않았던 이유는 뭔가요?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지금까지 왜 자료제출을 안 하셨는지?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으나 아마 그동안 수사와 공소유지 활동의 밀행성 보장을 위해서 관행적으로 안 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기표 위원 이게 이전에도 지적된 적이 있나요?

○김용민 위원 지적은 계속, 자료제출은 우리가 항상 지적하는데……

기조실장님,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국가 안보와 관련된 건가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꼭 그렇진 않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렇지요? 법에 제출을 하라라고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면 따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무원들은?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예, 법에 돼 있으면……

○김용민 위원 답변해 보세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규정 해석상 가능하면 따르는 게 맞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두 번 지적되는 얘기들이 아니고 지난 번 전체회의 때도 왜 제출하지 않느냐라고 전문위원도 보고하고 위원장님께서도 강력하게 지적하고 했던 말이에요.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에서 전향적으로 제출하겠다는 말을 하는 게 마치 무슨 ‘국회가 요구하니까 한번 들어 줄게’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는데 반대입니다.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용민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제출해야 되는데 저희가 먼저 ‘그래, 수사기밀은 우리가 좀 자제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모를까, 법무부에서 먼저 ‘수사기밀이니까 못 준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그런 표현이라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김용민 위원 하여튼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소위에서는 징계로 강력하게 의결하고요. 나중에 서영교 위원장님께서 전체회의 진행하시면서 법무부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하면 전체회의에서 조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한두 번 지적한 게 아니라 좀 강력하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김용민 위원, 그런데 서면으로 먼저 내신 다른 분이 주의하고 시정을 했으니까 이성운 위원이 얘기한 대로 시정—징계 바로 다음이 시정이니까—정도로 하고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의견을 김용민 위원님이 내시면 어떨까요?

○김용민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위원님들, 이성운 위원이 제시한 대로…… 죄송하지만 서영교 의원님 안 계시니까 주의는 빼고, 같은 내용인데 이성운 위원 시정으로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52페이지 24번입니다.

법무부 의견 부탁드립니다.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24번 지적에 대해서는 지적 제외를 요청드립니다.

경위를 설명드리면 2025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법관의 직책수행경비 지급구간이 신설되었고 그에 따라 재정 당국에서 법무부로 연락이 와서 협의를 거쳐서 반영한 사항이 있습니다. 국회의 심의를 고의로 회피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과를 참작하시어 예산집행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적 제외를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저는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의도적으로 제외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성윤 위원이 안 계시긴 하지만 이 사안은 넘어가고 다른 더 중요한 것 논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제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58페이지 27번 항목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시정요구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합쳐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부적절한 예산과목으로 편성한 부분인데요. 주의하고 제도개선으로 의견이 나뉘져 있고 제도개선으로 광규택 위원이 의견 주셨고 법무부에서도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괜찮겠습니까?

○**광규택 위원** 예, 제도개선으로 하시지요.

○**박균택 위원** 계신 분 의견대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김한규** 감사합니다.

그러면 62페이지 29번 항목입니다.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시정요구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합쳐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제도개선으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68페이지 32번 항목입니다.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32번에 대해서는 지적 제외를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저희 구조금 지원제도가 그동안 홍보가 잘 안 돼서 예년과 달리 지금 적극적인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 같은 경우는 편성 액수를 넘는 집행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홍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만큼 제도개선을 하고 있으니 지적 제외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올해는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인데 집행이 어느 정도 됐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지금 편성액으로는 6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8월 기준으로 벌써 초과해서 6958만 원 상당을 집행하였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물론 저희 결산은 2025년도에 대한 거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긴 한데 김기표 위원님 어떠신가요? 올해는 잘하고 있다는데, 32번 지적 제외를 해 달라라는 요청인데요.

○**김기표 위원** 이걸 좀 얘기를 할 게 있는 게, 이게 제도개선을 하면 문제 안 생기게 할 수 있냐요, 지금 신고자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예, 저희가……

○**김기표 위원** 어떻게 할 수 있지요? 제가 주의로 한 것은 왜냐하면 2022년도에도 이게 지적이 됐었고 해마다 굉장히 실적이 나빠서, 제도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주의로 한 것인데 이게 과연 대책이 있느냐는 거예요, 대책이.

그러면 신고한 사람들한테 막 해 가지고 ‘신고하세요. 우리가 돈 지원해 줄게요’ 이렇게 가능한 문제냐는 거지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그냥 ‘제도개선만 해 달라’, ‘지적 제외해 달라’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제도개선이라도 한번 더 감안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제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아까 실장님께서 홍보를 하는 방법으로 올해는 지금 개선돼서 예산보다 더 집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김기표 위원** 그러시지요.

○**소위원장 김한규** 그래도 다시 한번, 작년도 부분이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 제도개선으로 해서 정리하시도록 하지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예, 저희가 그 집행 못 한 부분은 맞으니까……

○**소위원장 김한규**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으로 70페이지입니다. 33번 항목에 대한 법무부 의견 부탁드립니다.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시정요구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합쳐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일반수용비 집행 부진 사유인데요.

손슬 위원님 괜찮으실까요? 주의 요구하셨는데요.

○**손슬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양해해 주셔서 제도개선 하나로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38번 항목입니다.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38번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수준을 제도개선으로 낮춰 주셨으면 합니다.

형사보상금의 경우에는 차년도 형사보상금 소요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한 3개년 치 집행 평균액을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해 왔는데 이게 24년도, 25년도에 제주 4·3 직권재심 사건에 무죄가 많이 선고되면서 예상하지 못하게 폭증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산집행이 위법·부당한 경우가 아니므로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제주도 상황인데요. 저희가 막 강력히 요구해서 법원에서 형사보상 사건을 아주 신속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소요가 확 는 것은 맞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손솔 위원** 제도개선으로 하는데, 쌓여 있는 사건들이 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예측을 잘해서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터지는 게 아니라 예측 가능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지금 제주 4·3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무죄 판결 선고는 직권 재심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군법회의의 경우에는 거의 한 99%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선고 시점과 또 신청 시점에 차이가 있어서 추가로 더 들어올 것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저희가 추계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솔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참고로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징계, 주의 이렇게 있는데요. 징계 부분은 제외하는 걸로 하고 두 번째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묶고 마지막 주의 부분을 김동아 위원님이 따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양해해 주시면 두 번째 제도개선으로 남겨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82페이지 39번 항목입니다.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39번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유형을 시정에서 제도개선으로 낮춰 주셨으면 합니다.

검사 정원 대비 결원 비율이 좀 높아서 아마 정원으로 예산을 받은 것이 사용이 다 안 되고 이것이 이·전용된 측면이 있습니다. 적정한 인건비 예산편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법·부당한 경우가 아니므로 제도개선으로 변경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제도개선 괜찮을까요? 아까 다른……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88페이지 42번 항목입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이 부분은 저희가 의견이 있다기보다는 특검 측에서 의견이 있다는 회신이 와서 저희가 의견 있음으로 기재를 하였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특검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있고 독립성 보장 취지에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특별한 의견은 사실은 없습니다. 부처 의견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주진우 위원님.

○**주진우 위원** 이것은 제가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법무부 말씀도 들어 보니까 특검에 공문을 보내서 특검의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서 그 답변을 그냥 전달한 것이

고 법무부는 그와 관련해서 별도의 의견은 없다는 뜻입니까?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예, 그렇습니다.

○**주진우 위원** 국민 예산을 일억도 아니고 몇십억을 다 썼는데 특히 특활비만 하더라도 지금 조은석 특검 21억, 민중기 특검 14억, 이명현 특검도 거의 7억 가까이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고, 그때 작년 결산 때도 여야가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이 관련해서 최소한의 항목들은 다 제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와의, 법사위의 일관성과 형평성도 유지해야 되고.

지금 이 부분을 설명하려면 특검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특검 관련해서 운영지원단장도 하나도 출석 안 하고 그냥 서면으로 내고 나서 그냥 아무것도 안 내고 말겠다 이것은 그 예산집행의 원칙도 그렇고 법사위의 예결산 심사 업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수용할 수가 없고요. 이것은 시정 등으로, 오히려 더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시정으로 명확히 남겨서 다음번 논의할 때 저는 이 부분은 출석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다른 위원님……

박균택 위원님.

○**박균택 위원** 과거 검찰이나 법무부가 일을 처리해 오던 방식하고 사실 유사하게 특검 측에서 요청하는 것 같은데 그런 관행도, 그게 옳은 것이었든 그른 것이었든 그 관행을 아마 참고해서 특검 측에서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존중해 주는, 이유가 설명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특검이라는 게 연속할 조직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끝나는 조직인데 굳이 여기서 뭔가 개선을 지나치게 강하게 요구할 만한 실익 자체가 별로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 결산이라는 것이 내년 예산편성에 참조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활동일 텐데 내년에 특수활동비가 또 문제가 되고 집행 방식에 대해서 감독해야 할 그 의미도 크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주의를 촉구하는 정도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런데 하나만 잠깐만 조금, 취지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좀 반론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특검은 그래도 법무부에 자료를 제출하든 뭐를 해서 최소한의 관리 감독을 받았는데 지금 법무부에서 특검에서 특활비 어디 쓰고 했는지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관리 감독을 했습니까?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저희가 국회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특검 측에 전달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 관계가 아니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기존에 법무부에서 하는 거랑 완전히 무관하게 특검이 너무 과도하게 한 것이고 이게 연속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더 결산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연속된 기간이면 이번에 뭐 하나 놓치고 넘어가더라도 다음 예산 심사하거나 결산 심사할 때 걸러지기 마련인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국민 전체가 어디에 얼마를 썼고 뭐 어떻게 했는지를 하나도 자료제출도 안 받고 그냥 몇 줄 받아서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끝내 준다고 하면 이것은 기존의 심사 기준하고 너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으로 해 놓고 전체회의에서 논의해 주실 것을 이 부분은 좀 강하게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박균택 위원님.

○**곽규택 위원** 지금 저는 그 앞에 41항 85페이지 예비비 사용으로 해 가지고 특검의 예산 사용 부분을 지적해 났고 내용 중에는 중복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88페이지 부분 하고.

저는 주의 의견을 냈는데 그에 대해서 법무부에서는 이견은 없어요. 그런데 주진우 위원님이 42번 항목에 대해서 시정 의견을 내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시정을 붙여 놓으면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이니깐 이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고 하시는 것 같고 그냥 주의는 주의로 끝나니까 이견은 없다고 하신 것 같은데.

41항·42항을 묶어서 보면 지금 특검이라고 하는 게 한시적으로 하는 거라고는 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와 가지고 특검이 거의 계속 돌아가고 있잖아요. 향후에 검사의 수사권이 다 폐지되면 대형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 하자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이렇게 예비비 마음대로 갖다 쓰고 특활비 마음대로 갖다 써도 국회에서는 그냥 그것 확인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법무부 상대로 주의라도 남겨 놓든지 아니면 최소한 부대의견이라도 달아가지고 향후에 발족하는 특검에 대해서는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국회에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강구한다 이 정도의 무슨 부대의견이라도 해 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다른 위원님들 어떠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특검의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그러더라도 이것은 검찰의 특활비랑 동일한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검찰은 올해 특활비를 안 썼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가 시정 조치 의견이 없는데 아까 김용민 위원님이 얘기하신 검찰국 예산이나 이거나 다 마찬가지로 국회의 수사하고 직접 관련되지 않는 것은 제출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주진우 위원** 하나도 제출 안 한 것만 문제 삼는 거기 때문에……

○**김기표 위원** 법무부는 아예 제외해 달라는 건가요, 이게 지금?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지금 말씀드린 이 특검 관련은 저희 의견이 아니고 특검 측에서 회신 온 특검 측 의견입니다.

○**김기표 위원** 그것은 조직 구조상 맞지 않고 결국 법무부 의견이어야 하지요, 이것은.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저희는 그 특검 의견을 그대로 하였습니다.

○**주진우 위원** 아니, 출석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김기표 위원** 특검하고 법무부하고 전혀 다른데 어떻게 특검 의견을 여기 법무부의 의견으로 넣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이것은 법무부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든지 간에 이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에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법과 제도가 지금 완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부에다 대고 질책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다고 좀 흔적을 남겨야 되면 이것은 시정까지 말고 주의로 하고 나중에 제도개선을 우리가 논의를 해 봐야 될 문제 같아요, 여기서 얘기할 것은 아니고.

○**주진우 위원** 지금 이번에 선관위 특검도 있는데 선관위 특검도 똑같은 기준으로 가

면 답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 했던 기준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서 특검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뭘 안 내겠다라고 하면 인정을 할 수 있는데 모든 내역에 대해서 전체를 안 내겠다라고 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결산 예산, 여야를 떠나서 이 부분은 저희조차도 그때는 특활비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제가 일부는 인정해 주자고 했던 입장이 거든요. 그때도 여야가 다 공히 동의한 부분은 뭐냐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사 기밀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일부는 내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것은 항목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는데, 이게 지금 여기도 주의 투성이인데 이것을 주의 정도로……

○**김기표 위원** 주의 정도로 하고 논의하는 것은 어떤가.

○**주진우 위원** 이게 지금 한시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체회의에서라도 한 번 더 논의할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김기표 위원** 주의 정도로 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게 맞지 않나.

○**곽규택 위원** 그러면 주의로 해 놓으시지요. 주의로 하고 전체회의에서 한 번 더 논의하시지요.

○**김기표 위원** 그렇게 일단 주의를 하고 대책을 사실 논의해야 될 문제지. 그렇게 하시지요. 이제 우리가 대책을 논의해야 될 문제지, 이게.

○**소위원장 김한규** 주진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주의로. 여하튼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저희가 의견을 모은 거니까.

○**주진우 위원** 문제의식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주의로 낮춰서 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예, 그것은 동의합니다. 문제의식은 다 동의해요.

○**소위원장 김한규** 주진우 위원님께서 이따가 전체회의 때 필요하면 발언을 한 번 더 해 주시지요.

○**주진우 위원** 예.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이것은 주진우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그대로 두고 조치만 시정에서 주의로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검찰국 관련해서는 마치고 그다음 부처로 이동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교정본부 1건 있고 부대의견 좀 보시겠습니다.

자료 93페이지입니다.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과 관련해서 이것은 수용자의 급식비·피복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실제 예산이 부족해서 이·전용, 증액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안에 보시면 법무부는 의무적·경상적 지출의 대규모 이·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추계방식을 개선하고 국회가 지적한 예산추계 부실이 반복된 만큼 예산편성 업무 점검 및 담당자 징계를 실시할 것, 박형수 위원님이 징계를 요구하셨고요.

그다음에 법무부는 예산편성 기준인원과 실제 수용인원의 격차 및 그 추이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산편성 시 재정소요를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손솔 위원님은 주의를, 김기표 위원님은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마지막 부대의견 11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부대의견에 5개 항목이 나왔는데요. 3개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의견이 없고 위에 2개 항목 보시겠습니다.

법무부는 소비자단체 등 공신력 있는 주체의 원고적격 부여방식, 기업의 위법행위와 책임 유무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1차적 소송절차, 1차 절차 후 실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2차적 배상절차 등을 고려해서 현실적인 집단소송 대안을 적극 검토한다, 광규택 위원님이 요구하신 부대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법무부는 배임죄 폐지 대체입법 연구용역의 과업지시서, 수의계약서 원본, 용역결과서, 대체입법 추진 계획, 관계·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및 형사법개정특위 논의 등에 사용한 예산 사용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한다, 광규택 위원님이 지적한 부대의견인데 부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이것도 나눠서 45번부터 교정본부 것부터 법무부 의견 듣겠습니다.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45번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유형을 징계에서 주의로 변경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해마다 늘어나는 수용자 인원에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신청하였는데요. 재정 당국에서 저희가 신청한 만큼 반영해 주지 않고 평균 수용인원으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 수요와 편성액 간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전용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기획예산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손솔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주의로 하고 올해 예산심의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나중에 논의하는 걸로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주의 정도로 하고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징계는 제외하고?

(「예」 하는 위원 있음)

○광규택 위원 하나 좀 물어볼게요.

○소위원장 김한규 광규택 위원님.

○광규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해마다 우리 예산 당국에서 실제 수용인원에 못 미치는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저희가 지금 23년 이후로 수용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마약사범도 증가하고 성범죄사범도 증가해서 수용인원은 급격하게 늘어나는 반면 예산편성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광규택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정말 법무부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하셔 가지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인권에 문제 되는 거잖아요, 급식비·의료비 이런 게 포함돼 있는 금액인데.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예, 그렇습니다.

○광규택 위원 예산편성 할 때 실제 수용인원 기준으로 해 달라고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세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저희가 적극적으로 얘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광규택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대의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대의견 두 가지에 대해서 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집단소송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옵트아웃 방식의 집단소송 제도 도입으로 지금 법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옵트아웃 방식은 증권 분야에서 20년 이상 운영돼서 사례가 축적되어 있고 분쟁의 일괄적 해결 및 실질적 피해 구제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옵트아웃 방식을 도입하더라도 소 제기를 원하지 않거나 별도의 소 제기를 원하는 피해자는 제외 신고를 할 수 있고 소송 허가를 통해 남소 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충실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을 좀 변경해서 의견 없음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일부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성·보관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공개하기 좀 어려운 내용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출이 어렵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두 번째, 제출할 수 있는 게 뭔가요, 변경해서 동의한다는 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연구용역 목록 그리고 용역비용 등을 정리해서 제출한 바가 있고 그 이외에도 이 예산 내역도 정리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업지시서나 수의계약서 원본, 용역결과서, 대체입법 추진 계획은 작성·보관하고 있지 않거나 저희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이라서 제출이 곤란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의견은 들었고 이제 꼭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곽규택 위원** 그런데 기조실장님, 연구용역의 용역결과서가 배임죄 폐지나 대체입법 관련된 연구인데 이게 왜 공개하기가 힘든 거지요? 왜 제출하기가 힘든 거지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이 부분은 아마 뒤에 한번 실무자에게 의견을 들어도 될까 싶습니다.

○**곽규택 위원** 실무자 누가 계십니까?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이것은 법무실이어서 지금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곽규택 위원**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일단은 첫 번째 제가 낸 부대의견 의견이 있다고 하신 부분은 일단 철회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입법 논의 과정에서 계속해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두 번째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배임죄 폐지 대체입법에 대한 법무부에서 연구용역을 한 그 결과지요, 사실은. 그 결과가 어떤지, 연구용역 결과는 어땠는데 법무부에서는 그와 다른 의견인지 아니면 연구용역 결과가 같은지 이런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연구용역 결과서를 안 주겠다면 이게 뭐 비밀리에 진행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임죄 폐지, 뭐가 문제인지는 법무부에서 잘 아시잖아요. 지금 개정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폐지를 하려고 하는 이유 이런 것을 갖다 제가 보고 싶었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법무부에서 수정의견을 하시면 그에 따른 수정은 가능하겠지만 이것은 부대의견으로 남겨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수정을 하시고.

그런데 광규택 위원님, 용역 결과서나 이거는 국감 때 자료제출하고 국감 때 질의를 하시는 걸로 하고 이거는 결산인데 꼭 용역 결과서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광규택 위원 연구용역 비용에 연구용역에 들어간 비용이 어차피 다 결산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 여러 개로 쪼개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다 했어요, 또. 16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다 잘라 가지고.

○소위원장 김한규 그럼 법무부에서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은 표현은 좀 바꾸고 배임죄 폐지 및 대체입법 관련 연구용역에 관련된 서류, 예산과 관련된 서류를 제공하는 형태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용역 결과서를 명시를 꼭 할 필요 있을까요, 광규택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안 된다고 하는 거니까.

안 되는 이유는 지금 담당 부서가 아니라서 그렇다는 건가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제가 정확히 모르고 담당자가 지금 아마 밖에 대기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바로 확인이 어려운……

지금 들어왔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통상적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용역 하면 결과서를 다 제출하나요, 국회에?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저희가 연구용역 중에 공개된 공개 자료로 활용 가능한 게 있고 또 비공개로 해서 연구용역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구별이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이 부분은 위원님들 의견을 더 들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떠신가요, 부대의견? 지금 정부는 일부 수정해서 넣을 수 있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김용민 위원 자구는 위원장님에게 위임하겠습니다.

○손솔 위원 그런데 지금 안 된다는 게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넣는 게……

○김기표 위원 가능한 수준으로 자구를 바꿔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광규택 위원 담당자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담당자 오셨다는데.

○김동아 위원 법무실에서 왔어요?

○법무부검찰과 구자원 아닙니다. 저는 검찰과 예산 검사 구자원 검사라고 합니다.

배임죄 부대의견 관련해 가지고……

○소위원장 김한규 앞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죄송한데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 있는 데로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검찰과 구자원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예산 검사 구자원 검사라고 합니다.

이 배임죄 부분 관련해서는 현재 연구용역 목록이랑 용역 비용 등은 아마 정리해서 소관 부서에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논의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용역 결과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존재하는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제출이 조금 어렵다는 것이고 당연히 이 법안 대체법안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완성 이 된다면 저희도 적극 제출에 협조할 예정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과업지시서나 수의계약서 원본은 어떤가요?

○법무부검찰과 구자원 제가 소관 부서에 확인하기로는 과업지시서나 수의계약서 원본 등은 지금 현재 부존재 한다고 확인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니다.

○주진우 위원 어떻게 수의계약서가 부존재 할 수가 있지요?

○곽규택 위원 아니, 계약서가 부존재 할 리가 있나.

○법무부검찰과 구자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서 원본’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용역계약을 체결한 그 내용 자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과업지시서 같은 경우는 표현이 딱 이게 아니더라도 관련된 게 있을 것 같으니까 ‘과업지시서’ 그다음에 ‘용역계약 관련 용역 계약서 및 관련 자료’ 이 정도로 하면 곽규택 위원님 어떨까요?

수의계약서 원본이라는 표현이……

○곽규택 위원 어차피 제가 자료제출 요청한 것은 지금 뭐라는 거는 법무부에서 알고 계실 거고 그거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저는 아직도 납득은 잘 안 돼요. 제가 나중에 전체회의 때나 또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할 건데 그래도 부대의견은 제가 지금 한번 문구를 정리해 볼게요. ‘법무부는 배임죄 폐지 대체입법 연구용역에 사용한 예산 사용내역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 정도로 해 주시면……

○소위원장 김한규 괜찮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대의견은 첫 번째 건은 철회해 주셨고 의견 없는 것까지 포함해서 총 네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정리한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곽규택 위원님, 그러면 부대의견을 예산 관련 자료 내는 결로 한정돼 하시는 거지요?

○곽규택 위원 예, ‘예산 사용내역 등을’ 이렇게 해 가지고 정리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법무부 소관 결산 논의 사항을 정리해 드리면 시정 1건, 주의 11건, 제도개선 44건 그리고 부대의견은 4건, 시정요구사항은 총 5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금까지 논의한 시정요구 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해서 정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사항, 부대의견 등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님 그다음에 위원회 직원, 속기사 여러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곽규택 김기표 김동아 김용민 김한규 박균택 손 솔 주진우

○청가 위원(1인)

김태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전문위원 윤상열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 이세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감사원

사무총장 정상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차범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이재승

법제처

차장 최영찬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차장 기우종

○헌법재판소측 참석자

헌법재판소사무처

사무차장 지성수